자체감사규정

제정: 2013. 07. 01. 개정: 2015. 02. 06. 개정: 2016. 04. 08. 개정: 2019. 09. 06. 개정: 2023. 05. 12.

담당: 평가감사실(02-950-5410)

목 차			
제1조(목적)	제2조(감사의 범위)	제3조(감사의 구분)	제4조(감사부서)
제5조(감사계획의 수립)	제6조(감사팀의 편성)	제6조의2(감사결과심의위원회)	제8조(감사통보)
제9조(감사연기의 요청)	제10조(자료제출 등)	제11조(감사방법)	제12조(감시자의 준수사항)
제13조(감사결과 보고)	제14조(긴급보고)	제15조(시정요구 통보)	제16조(시정조치 보고)
제17조(이의신청 및 조치)	제18조(감사결과 처분)	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 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운영 현황의 적정성 및 투명성확보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하므로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실시되는 자체 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감사의 범위) ① 감사는 조직, 인사, 학사, 회계, 기타 모든 업무에 실시할 수 있다. ②(삭제19.09.06)

제3조(감사의 구분)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각 부서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매년 실시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감사 분야,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 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(개정16.04.08)(개정19.09.06)
- ③ 특별감사는 총장의 특별지시가 있는 경우 특정부서 또는 분야에 대해서 실시한다.
- ④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·분석 및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(감사부서) 이 규정에 의한 감사업무는 평가감사실에서 주관한다. 다만, 총장은 필요에 따라 감사업무를 달리 위임할 수 있다.(개정15.02.06)(개정16.04.08)

제5조(감사계획의 수립) 평가감사실은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되 동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(개정15.02.06)(개정16.04.08)

- 1. 감사의 목적
- 2. 감사 대상
- 3. 감사실시 시기
- 4. 감사 종류 및 감사 사항
- 5. 감사팀 구성 내용(개정16.04.08)
- 6.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감사팀의 편성)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팀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한다(개정15.02.06)(개정16.04.08)

- ② 감사팀장은 평가감사실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감사팀원의 구성은 본 대학 교원 및 교직원으로 하며 평가감사실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.(개정15.02.06)(개정16.04.08)(19.09.06)
- ③ 감사팀장과 팀원은 피감사부서의 감사범위 기간 동안 해당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없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.(개정15.02.06)
- ④ 삭제(개정15.02.06)(삭제19.09.06)
- ⑤ 필요한 경우, 본 대학 교원 및 교직원 외 외부 전문가를 감사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.(신설23.05. 12)

제6조의2(감사결과심의위원회) ① 감사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구성 한다.

- ②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감사결과 및 시정·권고 조치 등의 적절성에 대해 심의한다.
- ③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5명 이내의 교원 및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평가감사실장의 추천으로 총장이임명한다. (신설 19.09.06)
- ④ 필요한 경우, 본 대학 교원 및 교직원 외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(신설 23.05.12)

제7조(감사실시 세부계획) 삭제(삭제19.09.06)

제8조(감사통보)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감사 사항, 감사일정 등을 피감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실시 할 수 있다.

제9조(감사연기의 요청) ① 피감사부서는 감사 활동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감사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전 항의 감사연기 요청은 그 사유 등을 명료하게 기술한 서면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자료제출 등) ① 감사팀은 감사실시에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대상부서에 기본통계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감사팀은 피감사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- 1. 관계 서류,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

- 2. 진술서, 경위서 또는 확인서 제출
- 3. 해당 업무 관련 교직원(전·현직)의 출석·진술
- 4. 기타 효율적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부서장이나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1조(감사방법) ① 감사실시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 감사의 방법에 의한다.

- ② 실지감사는 감사팀이 피감사부서 및 현장에서 실시한다.
- ③ 서면감사는 감사팀이 피감사부서에 관계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.(개정16.04.08)
- ④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팀의 판단에 따라 서면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. (개정16.04.26)

제12조(감사자의 준수사항) 감사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감사자는 관계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.
- 2. 감사자는 직무상 취득한 행정상의 기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.
- 3. 감사자는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의 피감사자가 업무상의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 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4. 감사는 피감사부서의 평상근무 상태 하에서 실시하고 일상 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.

제13조(감사결과 보고) 감사팀장은 감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1. 감사 목적
- 2. 감사실시 기간 및 일정
- 3. 감사대상 부서
- 4. 감사 주요 내용
- 5. 감사에 관한 종합의견
- 6. 시정조치 사항
- 7. 개선 및 건의 사항
- 8. 기타 감사 관련 사항

제14조(긴급보고) 감사팀장은 감사 진행 중 중대한 위법·부당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평가감사실장 및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15.02.06) (개정16.04.08)

제15조(시정요구 통보) 평가감사실장은 총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피감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(개정15.02.06)(개정16.04.08)

제16조(시정조치 보고) ① 피감사부서의 장은 제15조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② 다만,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가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때에는 지연 사유 및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(이의신청 및 조치) ① 피감사부서의 장은 제15조의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고,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감사실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(개정15.02.06)(개정16.04.08)

② 평가감사실장은 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경우,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(개정 15.02.06)(개정16.04.08)

제18조(감사결과 처분) ① 총장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태도가 성실하고 업무개선에 현저한 성과가 있어 학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부서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

② 감사결과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규정 제52조 내지 제62조에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(개정15.02.06)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6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3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